

## 캠퍼스건설대책위원회 규정

2023. 12. 06. 최초제정

2024. 04 .01. 부분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의 마스터플랜에 따른 캠퍼스 건설 추진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캠퍼스건설대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심의·의결한다.

1. 공사 진행사항 검토에 관한 사항
2. 공사 계획변경(공사지연, 중단 및 협의 등)에 관한 사항
3. 법적대응에 관한 사항
4. 공사 계약 및 업체선정에 관한 자문
5. 그 밖에 캠퍼스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3조(구성 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.

③위원은 공사계약 담당 부서장, 공사관리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이 외의 위원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내·외부 전문가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위촉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⑤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⑥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**제4조(위원장 직무)**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회의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공사계약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, 공사관리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.

**제7조(수당 등)** 위원회의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8조(기타)** 위원회 운영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

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7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